

열공급규정

2018. 10

주식회사 국인산업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	5
제 1 조	목 적	-----	5
제 2 조	적 용	-----	5
제 3 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	5
제 4 조	열공급 구역	-----	5
제 5 조	용어의 정의	-----	5
제 2 장	열수급 및 응축수 회수 신청과 계약	-----	7
제 6 조	수급신청	-----	7
제 7 조	열수급 및 응축수 회수 신청과 계약	-----	7
제 8 조	열수급 및 응축수 회수 동의	-----	8
제 9 조	열수급 계약	-----	8
제 10 조	계약 기간	-----	9
제 11 조	계약의 변경	-----	9
제 12 조	명의 변경	-----	9
제 13 조	사용자 신청에 의한 열 수급 계약의 해지 등	-----	10
제 14 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 수급계약의 해지 등	-----	10
제 15 조	열 수급 계약 해지 후의 채권, 채무 등	-----	11
제 3 장	공급 및 사용	-----	11
제 16 조	공급 개시	-----	11
제 17 조	공급기간 및 시간	-----	12
제 18 조	열공급, 응축수 수급조건 및 단위	-----	12
제 19 조	계약용량	-----	12
제 20 조	초과사용	-----	12
제 21 조	공급의 정지	-----	12
제 22 조	공급정지의 해제	-----	13

제 23 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13
제 24 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공급 중지	14
제 25 조	재 수급 신청	14
제 4 장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15
제 26 조	시설공사	15
제 27 조	비용의 부담	15
제 28 조	증설 공급	15
제 29 조	추가 공급	15
제 30 조	재 공급	16
제 31 조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16
제 32 조	보수계획에 관한 협조	16
제 33 조	공사비 결정 등	17
제 34 조	봉인 관리	17
제 35 조	수급지점 및 재산 한계점	17
제 5 장	열공급 요금	18
제 36 조	열공급 요금의 적용 시기	18
제 37 조	요금의 구성	18
제 38 조	요금의 계산	18
제 39 조	계량 검침	19
제 40 조	검침 단위	19
제 41 조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의 산정	19
제 42 조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의 조정	19
제 43 조	계산 기간	20
제 44 조	요금의 납부 의무	20
제 45 조	연체료	20
제 46 조	요금의 청구	21
제 47 조	강제 징수	21
제 48 조	요금의 계산 착오 등에 대한 시정	21

제 49 조	보증금	-----	22
제 50 조	일할계산	-----	22
제 51 조	요금의 끝수처리	-----	22
제 6 장	사용 시설 및 사용자 의무	-----	22
제 52 조	사용자의 시설기준 등	-----	22
제 53 조	시설의 점검 및 안전	-----	23
제 54 조	계량 장치의 설치	-----	23
제 55 조	계량기의 검사	-----	23
제 56 조	사용자의 의무	-----	23
제 57 조	공급시설 설치장소의 제공 및 출입 등	-----	24
제 58 조	손해배상 의무	-----	24
제 59 조	손해배상의 면책	-----	24
제 60 조	위약 처리	-----	25
제 7 장	안 전	-----	26
제 61 조	안전 책임	-----	26
제 62 조	통보 등	-----	26
제 63 조	사용 시설의 개선	-----	26
제 64 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	26
제 65 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 의무	-----	27
부 칙		-----	27
별표			
별표1	열요금표(열요금결정방법)	-----	28
별표2	열공급조건 및 계량단위	-----	30
별표3	열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의 조정기준	-----	30
별표4	응축수 수질 조건	-----	31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열 수급 신청서	-----	32
별지 제2호	열 수급 변경신청서	-----	33
별지 제3호	명의변경 신청서	-----	34
별지 제4호	열 수급 중지(해지)신청서	-----	3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산업(이하 “공급자”라 한다)이 열공급 구역 내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열을 생산 공급 할 때의 열 공급 요금, 시설 부담금, 공급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규정은 공급자와 제 4 조의 열공급 구역내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 ① 공급자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공급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규정의 개선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와 사용자는 이 규정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열공급 구역)

열 공급 구역은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 9 조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 구역으로 한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급자”라 함은 열 발생처로부터 열을 생산하거나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로부터 수열을 받아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자로서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와 주식

회사 국민산업을 말한다.

- ② “사용자”라 함은 공급자로부터 생산된 열을 공급받아 열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열 발생처”라 함은 보일러 및 터빈 발전기 등 열 발생기기를 설치하여 열을 생산하는 공급자 소유의 열병합 발전소 또는 공급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열생산시설을 말한다.
- ④ “주 증기관”이라 함은 열 발생처에서 생산된 열을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사용자 부지 경계선 직전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되는 지점까지의 모든 배관설비를 말한다.
- ⑤ “증기지관”이라 함은 압력별로 구분된 주 증기관 이후부터 열수급지점까지의 모든 배관설비를 말한다.
- ⑥ “응축수 주관”이라 함은 사용자에서 열을 사용한 후 응축된 응축수를 열공급자에게 회수하기 위한 수단의 열수송관으로서 사용자 부지 경계선 직후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에서 회수되는 응축수의 합류지점 이후부터의 모든 배관설비를 말한다.
- ⑦ “응축수 지관”이라 함은 각 사용자내에 설치된 열 수급지점 이후부터 응축수 주관 이전까지의 열수송관을 말한다.
- ⑧ “공급 시설”이라 함은 공급자의 열 발생처로부터 생산된 열을 각 사용자로 공급하거나 또는 응축수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의 열수송관으로서 주 증기관, 증기지관, 응축수 주관, 응축수 지관, 그 부속설비 등 열공급 및 응축수 회수에 필요한 공급자 소유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 ⑨ “사용 시설”이라 함은 공급자의 열발생처로부터 생산된 열을 사용 또는 회수하기 위해 사용자에서 설치한 열수급지점 이후의 모든 배관설비로서 사용자 소유가 되는 시설을 말한다.
- ⑩ “열수급 지점”이라 함은 열의 공급 및 회수가 이루어지는 공급 시설과 사용 시설의 접속지점으로서 이는 사용자 부지경계선 내 Block Valve를 말한다.
- ⑪ “Valve Station”이라 함은 열의 안전공급, 회수, 계량, 열의 공급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로서 유량계, 각종 밸브, 스트레이너, 온도계, 압력계 등의 설비를 말한다.

- ⑫ “계량 장치”라 함은 사용자의 열 사용량 또는 공급하는 열의 조건인 유량, 온도, 엔탈피 등을 계량하는 기기로서 사용자 내에 설치된 유량계와 공급자의 열발생처에 설치된 원격측정계량장치를 말한다.

제 2 장 열수급 및 응축수 회수 신청과 계약

제 6 조 (수급신청)

- ① 공급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사용할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사용자 배치도
 - (2) 보일러실 설치도 및 배관 배치도
 - (3) 밸브 스테이션 (VALVE STATION) 위치도 및 사용 시설 개략도
 - (4) 공정도 및 설명서
 - (5) 응축수 회수에 관한 상세 경로도
- ② 열수급 신청은 신설 수급 신청, 증설 수급 신청, 재수급 신청, 추가 수급 신청으로 한다.
- ③ 신설 수급 신청은 사용자가 열을 사용할 해당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최초 열 공급 사업 개시전의 열수급 신청에 한한다.

제 7 조 (열수급 및 응축수 회수 신청과 계약)

- ① 열수급 신청은 열 사용장소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열 사용 장소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분 표시하여 공동 명의로 신청하거나 또는 열 공급 요금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보증을 받거나 사용자가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 하고 신청할 수 있다.
- ② 다수의 사용자가 열수급 신청을 하는 경우 공급자가 인정하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급자로부터 열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응축수에 관하여 공급

자에게 회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8 조 (열수급 및 응축수 회수 동의)

- ① 공급자는 사용자의 수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는 열 수급에 승낙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수급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열 공급이 제한될 때
 - (2) 공급 시설의 공급 능력을 초과하거나 공급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3) 열 공급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대한 열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4) 이 규정 이외의 열 공급 조건으로 공급 요청을 한 때
 - (5) 사용자가 열공급자에게 회수시키고자 하는 응축수가 열공급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6) 제 21 조 제 4 항에 따라 열 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용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열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단, 미납요금을 납부한 때에는 다시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열수급 계약)

- ① 사용자의 열수급 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 승낙을 한 때에는 공급자와 사용자는 열수급 계약을 체결한다.
- ② 열수급 계약은 계약서에 공급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공급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1) 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 (2) 시설 분담금 또는 공사비 부담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
 - (3) 열 공급 요금 등의 체납금이 있는 경우 그 납부
 - (4) 사용 시설의 점검 결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규

- 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완
- (5) 제8조 2항과 별표4의 응축수 회수 수질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 10 조 (계약 기간)

- ① 열수급 계약 기간은 공급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초 증기 공급 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② 열 수급계약 만료 전 3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열수급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후 1년씩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 ① 공급자는 열 수급계약 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열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열의 최대사용 계약량을 증감하기 위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열수급 변경신청(별지 제2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의한 공급 중지 기간의 경우 및 직전의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열공급 시설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급자가 결정한다.
- ④ 제2항의 계약변경 신청은 변경 전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 (명의 변경)

- ① 매매, 임대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사용자 명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 사용자는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제 9조의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신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단, 신 사용자는 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열공급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제9조의 열수급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신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명의변경 신청 없이 전 사용자의 동일장소에서 열을 계속 사용하였을 때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열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상속, 법인의 합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신 사용자는 열수급 계약을 변경하여 열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으며, 신 사용자는 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 13 조 (사용자 신청에 의한 열 수급계약의 해지 등)

- ① 사용자가 열의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희망일 1개월 이전에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열수급 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된다.
 - (1)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 신청을 미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에 열 수급 계약이 해지된다.
 - (2)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 희망일에 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에 열 수급계약이 해지된다.

제 14 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열 수급계약의 해지 등)

- ① 공급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열 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사용자의 열 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져 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에 열 수급계약이 해지된다.
- ③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공급이 중지중인 사용자가 중지 신

청기일이 경과되어도 재수급 신청 또는 재 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 신청 기간 경과 후 10일 되는 날에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5 조 (열 수급계약 해지 후의 채권, 채무 등)

- ① 열 공급 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열 수급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② 공급자는 열 수급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이미 설치된 공급자 소유의 공급 시설 또는 사용 시설을 사용 장소 내에 계속 존치할 수 있으며, 열 수급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사용자는 공급자 소유 시설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상의 변경, 시설의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경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③ 제 13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수급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사유를 해소하고 동일 사용 장소에서 동일사용자가 열을 다시 사용 신청할 경우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3 장 공급 및 사용

제 16 조 (공급개시)

- ① 공급자는 열 수급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게 대하여 공급 시설 및 사용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에 그 시설의 점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급자와 사용자가 사전 협의한 공급 예정일에 열 공급을 개시한다.
- ② 공급자는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 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한다.
- ③ 공급자는 필요할 경우 제 1항의 열 공급예정일 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 운전기간 동안 열을 공급 할 수 있다.

제 17 조 (공급기간 및 시간)

사용자에 대한 열의 공급은 기간 및 시간의 제한 없이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열공급, 응축수 수급조건 및 단위)

- ①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열공급 조건은 별표 2와 같고 열공급자가 사용자로부터 수급하는 응축수의 수질조건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용열부하의 심한 감소 또는 증가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별표의 열 공급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 ② 계량의 단위는 시간당 Ton을 사용한다.
- ③ 사용자가 열공급자에게 회수시키는 응축수의 회수량은 사용자의 잉여응축수를 고려하여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9 조 (계약용량)

- ① 계약용량은 사용자가 1시간을 단위로 열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양으로 한다.
- ② 계약용량의 결정은 사용자의 신청량과 공급시설의 공급능력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결정하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용량을 초과하여 열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초과사용)

- ① 공급자는 사용자가 계약용량을 초과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열공급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열공급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열 공급의 중지 또는 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 (공급의 정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 열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정지하는 사실을 정지일 3일 전 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다.

- 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긴급을 요할 때
- ② 사용자가 사용장소 내에 있는 공급자의 소유 시설을 훼손하는 등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때
- ③ 사용자가 공급 시설 또는 사용 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
- ④ 사용자가 열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할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공급자가 발송한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요금 납부를 아니 한 때
- ⑤ 사용자가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 ⑥ 사용자가 제 53조 및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 상 문제 발생이 예상될 때
- ⑦ 사용자가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장소의 출입 및 필요한 장소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을 때
- ⑧ 사용자의 열요금 및 연체료 총 금액이 제49조에 의거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 22 조 (공급정지의 해제)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 당한 사용자가 열 수급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공급자에 대한 열 사용 요금, 위약금, 손해 배상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열 공급을 재개한다.

제 23 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될 때에는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 (2) 열의 수급상황에 심한 불균형 또는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3) 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4) 공급시설의 보수, 변경 및 기타 공사로 열공급이 불가능할 때
 - (5) 한전의 계통사고로 공급자의 발전설비의 분리 및 전원 상실이 발생할 경우
 - (6) 비상재해, 기타 안전상 부득이하여 사용자와 협의한 때
- ② 공급자는 제 1 항의 경우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서면,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 (1)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 (2)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시간
 - (3) 기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제 24 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공급 중지)

- ① 사용자는 열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열 수급 중지신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열 수급 중지 신청에 의한 중지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중지기간을 초과할 때는 중지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재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 중지 신청은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열 수급 중지 신청일, 희망일, 중지일, 중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공급 중지한 사용자가 열 수급신청을 다시 제출할 때는 수급 중지월로부터 재 수급신청 전월까지의 사용요금 중 고정요금분(매월)을 납부하고 재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중지기간 내의 고정요금분은 수급 중지월 사용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 25 조 (재 수급 신청)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수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수급이 중지된 자가 열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 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제 24 조의 사유로

열 수급이 중지된 자가 재 수급 신청을 할 때에는 제 6 조 1 항, 각 호, 제 8 조 제2항, 제 9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제 26 조 (시설공사)

- ① 공급 시설에 관한 공사는 공급자가 시공한다. 다만, 공급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때에는 공급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결정한다.
- ② 사용 시설에 관한 공사는 사용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급시설 및 사용 시설을 공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 (비용의 부담)

- ①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열을 사용할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최초 열공급 사업개시 전 공급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사용 시설의 설치 및 공급 시설과 사용 시설의 연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② 신규로 열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공급시설의 추가, 증설,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28 조 (증설 공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이미 설치한 공급 시설을 증설하여 열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증설 수급 신청에 의하며,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29 조 (추가 공급)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는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최초 열 공급 사

업 개시 후 새로이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급자가 이미 설치한 공급시설 외에 별도의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열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 수급 신청에 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30 조 (재 공급)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열 수급계약의 해지 또는 열사용의 중지 이후에 열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열 수급계약의 해지, 열 사용의 중지 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 멸실된 공급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31 조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사용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급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급 시설 중 사용자 소유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32 조 (보수계획에 관한 협조)

공급자가 사용자의 열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보수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각 사용자는 다음 연도의 월별 설비가동계획, 월별 열 수요계획 및 연차 보수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는 사용자의 열수요계획과 보수계획을 종합하여 열공급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한 정비보수계획을 확정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정기보수 이외의 공급시설 또는 부대설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내용과 기간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보수공사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열사용량에 변동이 예상되는 신·증설 및 개·보수 공사계획이 결정되면 열수요계획을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3 조 (공사비 결정 등)

- 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급자가 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할 때의 공사비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공사비가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각 사용자로부터 공사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 분담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사용자는 제 1 항의 공사 비용을 공사 착공 전에 공급자가 지정하는 수납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설계의 변경, 재료 또는 노임 단가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 후 정산한다.

제 34 조 (붕인 관리)

- ① 공급자는 공급 시설 또는 사용 시설 중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붕인 관리한다.
- ② 사용자는 공급자가 붕인 관리하는 시설을 임의로 파손, 조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약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제 2항의 위약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계량기 교체비용 및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는다. 단, 부정사용요금을 계측할 수 없을 경우 전년동월 사용요금을 부정사용요금으로 적용하며, 전년동월 사용요금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월 평균사용요금을 부정사용요금으로 하여 적용한다.

제 35 조 (수급지점 및 재산 한계점)

- ① 열의 공급 및 회수가 이루어지는 공급시설과 사용 시설의 접속지

점인 사용자 부지경계선 내 Block Valve를 수급지점으로 한다.

- ② 열 발생처로부터 수급 지점 이전까지를 공급 시설로 하고, 수급 지점 이후를 사용 시설로 하되, 재산 한계점은 공급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시설은 공급자 소유로, 사용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시설은 사용자 소유로 한다.
- ③ 열 공급의 원활한 운영과 공급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공급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공급자 소유로 할 수 있다.
 - (1) 제 27 조 2항, 제 28 조, 제 29 조에 의하여 교체 증설, 추가,이설된 공급 시설
 - (2) Valve Station

제 5 장 열공급 요금

제 36 조 (열 공급 요금의 적용 시기)

- ① 열 공급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열수급 계약에 의하여 열의 수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 ② 사용자가 열 수급 계약에 의한 수급 개시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 개시 예정일 5일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요금의 체계, 요금의 계산 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 37 조 (요금의 구성)

- ① 사용자가 부담할 요금은 요금계산 기간 동안 사용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다.
- ② 사용요금은 사용자의 자기 열생산 단가에 가격 결정 요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자기 열생산 단가는 별표1 열요금표에 따라 산정한다. 사용요금 단가의 산정방법은 사용자와 공급자의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 38 조 (요금의 계산)

- ① 사용자가 부담할 열요금 단가는 열 공급의 운영 상황과 공익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결정한다. 이때에 공급자는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
- ② 공급자는 열에 대한 요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 (1) 공급자가 공급하는 열에 대한 요금은 사용요금으로 한다.
 - (2) 열에 대한 요금의 세부계산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열수급 계약에 의한다.

제 39 조 (계량 검침)

- ① 열 사용량의 검침은 공급자의 원격전산계량장치의 검침으로 한다.
- ② 정기검침은 원칙적으로 매월 말일 24:00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 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할 수 있다.

제 40 조 (검침 단위)

계량기의 검침은 제 18조 제 2항의 계량단위를 사용한다.

제 41 조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의 산정)

- ①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의 산정은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검침량으로 한다.
- ② 매월의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은 당월 정기 검침일의 검침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③ 사용자가 회수시키는 응축수의 수질 조건이 별표 4의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공급자가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분량만큼 응축수 회수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2 조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의 조정)

- ① 제 39조의 공급자 원격전산계량장치와 사용자 계량장치에서 검침된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 원격전산계량장치의 검침량으로 한다. 다만 양측 검침량의 차이가

공급자 원격전산계량장치의 이상으로 인한 것을 공급자가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계량장치의 검침량으로 한다.

- ② 공급자 원격전산계량장치 및 사용자 계량장치에 이상이 있거나 전원의 상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열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을 달리 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3 조 (계산 기간)

요금은 전월의 정기 검침일 다음날로부터 당월 정기 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한다)으로 계산하며 일할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다만, 열의 공급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개시 일로부터 최초 정기 검침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수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직전의 정기 검침일로부터 해지일 또는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 44 조 (요금의 납부 의무)

공급자는 매월 15일까지 직전 검침기간에 대한 월간 열요금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사용자는 동 요금을 청구 당월 말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하며, 이하 “납기일”이라 한다)까지 지정된 수납 기관에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납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5 조 (연체료)

- ①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납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체료”라 한다)을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기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 1개월마다 제 1항의 고지한 요금(연체료포함)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의 연체료는 제 21 조 4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정지일이 속하는 월까지 적용한다.

- ③ 공급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열요금 납부 독촉장을 사용자에게 발급 한다.
- ④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과 연체료 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1. 요금에 대한 연체료
 2. 요금

제 46 조 (요금의 청구)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요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사용자는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제 47 조 (강제 징수)

- ① 공급자는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기일로부터 1개월 경과할 경우, 공급자는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② 공급자는 제 1 항의 절차 개시에 관한 내용을 절차 개시일 5일전 까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8 조 (요금의 계산 착오 등에 대한 시정)

- ① 요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서 규정한 이의 제기로 요금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월분에서 정산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정정된 청구서를 발부한다.
- ③ 사용자가 납기 후 또는 요금 납부 후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요금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익월 분 요금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되지 않은 요금 및 익월 분 요금에서 정산함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정정된 청구서를 발부한다.
- ④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요금의 납기 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 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이의 제기로 요금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 45조의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9 조 (보증금)

- ① 공급자는 신규 사용자 및 요금의 연체이력이 있는 사용자 등 요금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급 개시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써 3개월분 예상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공급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 증권, 상장 유가 증권, 지급 보증서 등(이하 “보증증서”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증금 또는 보증 증서의 예치 기간은 24개월로 하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2년을 단위로 연장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예치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예치 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공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50 조 (일할계산)

- ① 요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요금을 일할 계산한다.
 - (1) 요금의 체계, 요금의 단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검침기간 중에 열공급 중지, 열 수급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공급자는 일할계산을 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중간검침을 할 수 있다.
- ③ 일할계산에 있어 개시 또는 변경된 날을 포함하고 중지, 해지 또는 종료된 날은 제외한다.

제 51 조 (요금의 끝수처리)

공급자는 요금, 시설부담금 등의 계산결과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제 6 장 사용 시설 및 사용자 의무

제 52 조 (사용자의 시설기준 등)

- ① 사용 시설의 설치, 시공 및 유지, 보수 등은 집단에너지사업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 시설의 설계, 시공에 관하여 공급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3 조 (시설의 점검 및 안전)

- ① 공급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변경,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즉시 시설의 변경,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4 조 (계량 장치의 설치)

사용 시설 중 계량 장치는 공급자가 설치, 소유, 유지, 관리하고 사용시설과의 연결공사는 사용자가 시공하며, 검침과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 55 조 (계량기의 검사)

- ① 공급자는 계량기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량기의 오차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공인 기관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검사결과 계량기 이상 시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③ 공급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계량기가 계량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 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체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 56 조 (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공급 시설, 사용 시설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공급시설이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자를 선정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 1 항의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공급자는 사용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7 조 (공급시설 설치장소의 제공 및 출입 등)

- ① 열을 공급받는 사용자는 공급자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 (1)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와 시공, 보수 또는 순시 점검을 할 때
 -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시설을 점검할 때
 - (3) 계량기의 검침 또는 검사를 할 때
 - (4) 제 13 조, 제 14 조, 제 21 조 또는 제 23 조,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제 58 조 (손해배상 의무)

사용자가 제 5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의무를 해태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비용 등 공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59 조 (손해배상의 면책)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 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 하였을 때
- ③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중지 하였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 하였을 때
- ④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⑤ 공급자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 ⑥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해 열원시설 열배관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 ⑦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열원시설 공사나 열배관공사 등을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키는 등의 사유로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제 60 조 (위약 처리)

- ① 사용자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열 수급계약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는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공급자가 결정한다.
- ② 제 1 항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공급 시설 또는 사용 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요금과의 차액
 - (2) 이 규정에 의한 열 수용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과의 차액
 - (3) 사용자가 공급 계약의 해지, 열 공급의 중지 또는 정지로 인한 봉인 및 공급자가 관리하는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 후 부정 사

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한다.

- 1) 봉인 파손 : 30,000 원
- 2) 부정 사용 : 제 2 항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산정한 위약금.

제 7 장 안 전

제 61 조 (안전 책임)

공급 시설은 공급자가 안전책임을 지고, 사용 시설은 사용자가 안전 책임을 지며,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62 조 (통보 등)

- ① 공급자는 공급 시설에 누기,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누기,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공급 시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속히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사용 시설의 보수, 개조 등을 할 때에, 열의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미리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는 제 3항의 사항 또는 사용 시설의 안전상태에 관하여 사용자의 점검상황을 필요 시 요청할 수 있다.

제 63 조 (사용 시설의 개선)

공급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 시설에 대하여 개선 철거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4 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 ① 열 공급과 관련한 제반 문서 중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한다.
- ②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 및 기타 관계 기관 등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 65 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 의무)

공급자는 이 규정을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 17 조 1 항에 의하여 신고 하였거나 변경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열 요금 표

요금의 종류	내 용	
사용요금	연동요금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산업용 전기요금
		공업용수 가격
	고정요금	기타(소모품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연동요금 + 고정요금	
청구요금	요금계산 기간 동안 사용한 양 x 단위당 요금 (원/톤)	

※ 열요금 단가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열 요금 결정방법

1. 기준단가

사용요금 단가		
1) LNG 원단위	63m ³ /톤	스팀 톤당 소요 LNG량
2) LNG 단가	667원/m ³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3) LNG 소요비용	44,122원/톤	① X ② X 1.05
4) 전력 원단위	5.1kW/톤	스팀 톤당 소요 전력량
5) 전력 단가	100원/kW	산업용 전기요금

6) 전력 소요비용	510원/톤	④ X ⑤
7) 용수 원단위	0.15m ³ /톤	스팀 톤당 소요 용수량
8) 용수 단가	880원/m ³	공업용수 단가
9) 용수 비용	132원/톤	⑦ X ⑧
10) 기타 비용	350원/톤	소모품비, 수선비 등
11) 감가 상각	865원/톤	
12) 자기 열생산 단가	45,979 원/톤	③ + ⑥ + ⑨ + ⑩ + ⑪
13) 가격 결정 요율	89%	
14) 사용요금 단가	40,921원/톤	⑫ X ⑬

※ 상기는 예시 단가임.

2. 청구요금

요금 종류별	단 가		요 금 계 산
사용요금	L N G	원/톤	전월 LNG 사용요금 단가 x [1 + (금월 LNG가격 - 전월 LNG가격) / 전월 LNG가격]
	전 기	원/톤	전월 전기 사용요금 단가 x [1 + (금월 산업용 전기요금 - 전월 산업용 전기요금) / 전월 산업용 전기요금]
	용 수	원/톤	전월 용수 사용요금 단가 x [1 + (금월 공업용수가격 - 전월 공업용수가격) / 전월 공업용수가격]
	기 타	원/톤	기준단가로 고정
	단가 계	원/톤	
			사용량(톤) x 원/톤
청구요금 (부가세별도)	요금계산 기간 동안 사용한 양 x 단위당 요금 (원/톤)		

[별표 2]

열공급조건 및 계량단위 (제 18 조제 1 항관련)

압력구분	공급조건	
	공 급 온 도 (℃)	공 급 압 력 (bara)
고압증기	공급압력에서의 포화증기온도 기준	9 ± 3

※ 열 공급조건은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3]

열 사용량 및 응축수 회수량의 조정기준 (제 41 조제 2 항관련)

이상 구분	열 사용량(응축수 회수량) 조정방법
1. 일일중 측정량 이 없는 시간 발생 시	전일과 후일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 × 미 전송 시간 단, 단위시간동안 측정량이 없을 경우에는 전후시간대 측정량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일일중 모두 측 정량이 없는 경우	전주 같은 요일의 열 사용량(응축수 회수량)으로 한다. 다만, 전주의 측정량이 없을 경우에는 측정량이 있는 차전주의 측정량을 열 사용량(응축수 회수량)으로 적용한다.
3. 측정장치 이상 에 의한 누적전송 발생시	일정 시간동안 측정량이 없다가 이후 시간 동안 정상 사용량보 다 많은 측정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측정량이 없는 미전송시 간에 분배하여 열 사용량(응축수 회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4. 설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이상 측정량 발생시	열 사용량(응축수 회수량)이 공급자가 이상 측정량이라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량을 삭제할 수 있다.

[별표 4]

응축수 수질 조건 (제 40 조제 3 항관련)

수질조건	전기전도도 ($\mu\text{s}/\text{cm}$)	PH (25℃)	탁도 (ppm)	T-Fe (ppm)	SiO ₂ (ppm)	회수온도 (℃)
수질규격	10 이하	7.0 ~ 9.5	1.0 이하	0.8 이하	0.2 이하	80℃ 이상

